

[별지 제2호 서식]

건강보험 (화귀, 중증난치, 중증치매)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

*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면)

□ 희귀질환		□ 중증난치질환		□ 중증치매		※ 해당란에 ☑ 표기		
산정특례번호		*공단기재사항		접수일자		*공단기재사항		
수진자	① 건강보험증번호			② 가입자(세대주)				
	③ 성명			④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			
	⑤ 휴대전화번호			⑥ 자택전화번호				
	⑦ 이메일주소			⑧ 등록결과 통보방법				
	⑨ 주소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알림톡		
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		
	【요양기관 확인란】							
	① 신청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등록	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					
	② 진료과목			③ 진료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입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래	④ 진단확진일	
⑤ 상병명			⑥ 상병코드				⑦ 특정기호	
(8) 최종확진방법 ※ 종복 체크 가능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1. 영상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X-ray <input type="checkbox"/> CT <input type="checkbox"/> Sono <input type="checkbox"/> MRI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<input type="checkbox"/> 2. 특수생화학/면역학, 도말/배양검사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유전학적 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4. 조직학적 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5. 임상적 소견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6. 기타 () 검사)								
(9) 질병정보 - 가족력 ※ 희귀질환(극희귀·상세불명 희귀·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) 필수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<input type="checkbox"/> 조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모 <input type="checkbox"/> 외조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외조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성형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성형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녀)								
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요양기관명 (기호) : () (직 인)								
담당의사 (면허번호/전문의 자격번호) : () / (서명 또는 인)								
담당의사 전문과목 :								

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110

1

81

cl

시청오

(4)

81)

스진자와의 관계 (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
 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(비용의 본인부담), 제8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- 「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)
 -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, 세대주 성명, 수진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선화번호, 이메일주소, 주소, 신청인 성명, 수진자와의 관계, [요양기관 확인란]에 기록된 신청구분, 진료과목, 진료구분, 진단확진일, 상병명, 상병코드, 특정기호, 최종확진방법, 질병정보-가족력을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 - 공단이 수진·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.

유의사항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

-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[요양기관 확인란]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(의료법 제66조 등)에 의거,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·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2.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)

- 고시 제7조(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)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3.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.
 - 4.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·확인하여야 합니다.
 - 5.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,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.
 - 6.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,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7.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[산정특례 대상자 조회]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.
- * 단,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·정신질환·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(징구) 후 등록함
- 미성년자 : 부모(법정대리인) -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: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
8.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【수진자】

- ①, ② :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(세대주)명을 각각 기재합니다.
- ③, ④ :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.
- ⑤ :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⑥ :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(부재시 생략 가능)
- ⑦ :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.
- ⑧ :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(알림톡 또는 이메일)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"✓" 표시합니다.
- ⑨ :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

【요양기관 확인란】

- ① :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"✓" 표시 합니다.
- ② :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.
- ③ : 요양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"✓" 표시 합니다.
- ④ :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
- ⑤, ⑥, ⑦ :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, 상병코드,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.
- ⑧ :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,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(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)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.
- (검사항목) 1~6에 해당하는 내역을 "✓"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.
- ⑨ :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"✓" 표시 합니다.
- 가족력이 없는 경우 '없음'에 표시하고, 있는 경우 '있음'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.

건강보험 회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안내

1. 제도 목적 : 회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

2. 회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대상

- 회귀질환 : 보건복지부 고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4]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회귀질환환자
 -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 : 보건복지부 고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4의2]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환자
- * 신생아의 호흡곤란(상병코드 P22.0, P22.8, P22.9)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,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
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(상병코드 B20~B24)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

3.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회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: 10%

* 비급여,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,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

4. 적용기간 :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(단,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최대 120일)